

201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생 모집요강



한림대학교
입학처

목 차

1. 전형일정	3
2. 모집구분	3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4. 지원자격 및 기준	5
5. 지원절차 및 전형료	8
6. 전형방법	8
7. 구분표 및 제출서류	8
8. 지원시 유의사항	12
▣ 서식	
▶ 한림대학교 입학원서	13
▶ 학력조회 동의서	14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내용
원서접수	2016.7.1(금) ~ 7.8(금)	본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입학관리팀로 직접 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서류제출	2016.7.1(금) ~ 7.11(월)	입학관리팀
자격심사	2016.7.12(화) ~ 7.15(금)	입학관리팀
면접	2016.8.4(목)	본교홈페이지. 개별연락 통지
합격자 발표	2016.8.11(목)	본교홈페이지
합격증 교부	2016.8.11(목)	본교홈페이지
예치금 등록	2016.12.19(월)~12.21(수)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입학관리팀으로 직접 제출
합격자 등록 (등록금 납부)	2017.2.3(금)~2.6(월)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 마감시간(16:00) 전까지 납부

2. 모집구분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2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교포자녀 ②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③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④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⑤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기타 재외국민 ⑦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	---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대학	인문학부	20 (모집인원 미지정) (단,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10%만 모집가능)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국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부	
	정치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홍보학과	
	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재무금융학과	
자연과학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응용광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언어청각학부	
	체육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융합신소재공학과	

4. 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가.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대상자

(1)재외국민

[기본 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 학	거 주	체 류	근 무	거 주	체 류	거 주		체 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1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절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과건 교직원 등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적용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상에 기재된 기간
-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① 공무원의 범위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201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해외근무자의 근무형식]

-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연수.출장, 유학 또는 해외취업 형식의 단기근무자는 제외)

(2)외국인

[기본 학력요건]

국.내외를 통틀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 외국소재 고교졸업자
-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2년	2년	2년						

[재학기간의 기준]

-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를 의미함.
 -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5. 지원절차 및 전형료

가. 지원절차

입학원서 접수(지원자) → 서류검증 및 자격심사(입학처) → 면접(지원학과) → 합격
자발표(입학처) → 등록(지원자)

나. 전형료 : 50,000원

6. 전형방법

전화, 팩스, E-mail 등 통신장비를 통해 출신고교와 직접 연락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또는 지원자가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제출서류 공증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제출서류를 적격하다고 본다.(예시 : 아포스티유, 법무사의 번역공증본)

모집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 활용(%)				
		최종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 (구술)	필답	기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2%이내)	전모집단위 (의예, 간호, 국제학부 제외)			100%		

7. 구분표 및 제출서류

- ▶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 ▶ 지원자격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제출을 지원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201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가. 지원자격 구분표

구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가	영주교포자녀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자녀
나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마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다	해외근무상사 직원자녀	바	기타 재외국민자녀

나.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외국민					
		가	나	다	라	마	바
1	입학원서	○	○	○	○	○	○
2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4	가족관계증명서	○	○	○	○	○	○
5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	○	○	○	○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	○	○	○	○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	○	○	○	○	○
8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	○	○	○	○
9	재직증명서		○	○	○	○	○
10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		○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부납부이력			○	○		○
12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13	주민등록말소등본	○					
14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확인서					○	
15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					
16	재외국민등록필증	○	○	○	○	○	
17	제3국 수학인정서		○				○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아래 안내사항을 참조)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안내

(1)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정부기관 발행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발행문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3) 발급방법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관련기관

외교통상부 해외안정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02-2100-7500), 영사콜센터(02-3210-0404)

**2017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5) 아포스티유 협약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셜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셸제도, 통가, 니우에,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 홍콩) 키르기스스탄, 몽골, 바누아투, 오만, 우즈베키스탄(23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2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우루과이 (23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9개국)
계	104개국

8. 지원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기한 내 제출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지원포기로 간주한다.
- ▶ 제출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나, 재발행이 불가능한 일부서류에 한해 입학처 서류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후 반환이 가능하다.(호구부, 졸업증 원본 등)
- ▶ 성명,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을 위해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 학력사항은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하여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 졸업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가 입학일 이전까지 졸업 또는 학위취득을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을 불가한다. (입대휴학 및 진단서를 첨부한 질병휴학은 가능)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준한다.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HALLYM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s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 Tel 82-33-248-1303 ▶ Fax 82-33-255-7171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the school below.

I have applied to Hallym University in Chunchon and have agreed to allow Hallym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chool Name					
School Address					
School Email Address					
Student name			Tel		
Zip Code			Fax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Transfer)		Date of Graduation (Withdrawal)	

_____/_____/_____
(Month) (Day) (Year)

(Name) (Signature)